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 계약대상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기간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③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④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 이용자(보호자)의 의무

-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자료를 제공할 의무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3. 이용자(보호자)의 권리

-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②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3.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해지 처리한다.
 - 이용자의 이용료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간,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고지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이용자(보호자) 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 0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 산정 및 비용 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경감대상자는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2.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120분 이상	40,280	210분 이상	58,930
60분 이상	23,480	150분 이상	46,970	240분 이상	65,000
90분 이상	31,650	180분 이상	52,880		

■ 방문요양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서비스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서비스 급여비용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